

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, Inc.

이화여자대학교 대 뉴욕지구 동창회 회칙

개정 2007 년 3 월 6 일

개정 2017 년 3 월 21 일

개정 2018 년 4 월 10 일

개정 2019 년 3 월 12 일

제 1 장 총칙

- 제 1 조 본회 명칭은 이화여자대학교 대 뉴욕지구 동창회 (이대동창회)라 칭하며, 뉴욕 주정부와 미 연방정부의 Internal Revenue 에 법인체로 등록된 명칭은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ew York, Inc.이다.
- 제 2 조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에 속하는 지회이며, 모교 총동창회와 상호 협조한다.
- 제 3 조 위치 본회는 뉴욕, 뉴저지, 커네티컷 지역을 포함한다.
- 제 4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, 상호간의 복지를 위해서 서로 돕고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며, 문화 창달 및 지역 성장을 위한 상호교류에 목적을 둔다.

제 2 장 회원

- 제 5 조 본회의 회원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며, 이화여자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동창생들로 구성한다. 단, 졸업을 하지 않은 동창들은 준회원으로 가입한다.
- 제 6 조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이 있으며,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행하며, 제반 사업에 협력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(준회원은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.)

제 3 장 회의

- 제 7 조 정기총회는 1 년에 1 회씩 3 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유사시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, 회장이 소집한다.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총회 때, 부회장은 회장으로 인준되며, 차기회장이 될 부회장을 선출한다. 그 외의 임원은 신임 회장이 임명한다.
- 제 8 조 정기총회는 제반 규칙의 재정과 사업안 통과와 모든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를 한다.

제 9 조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임원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.

제 4 장 임원회 구성 및 역할

- 제 10 조 임원회는 회장, 부회장(차기 회장), 총무, 회계, 부회계, 서기, 부서기, 각 지역대표, 각 대학대표 및 홍보 출판부로 구성된다. 단, 홍보부와 출판부를 따로 둘 수도 있다. 그리고 회장, 부회장 이외의 임원들은 임기에 제한없이 연임 할 수도 있다.
- 가. 회장은 동창회를 대표하며, 그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 현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.
 - 나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.
 - 다. 부회장은 연중행사의 준비위원장을 겸한다.
 - 라. 총무는 본 회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업 계획의 실천 및 보고에 관한 일들을 총괄한다.
 - 마. 회계는 본 회의 재정일체를 담당하며, 정기총회에 예산안 및 결산보고를 한다. 회계는 회장과 함께 동창회 수표에 연대서명을 한다. 부재 시에는 부회장, 부회계, 이사장 중에서 한 명이 연대서명한다.
 - 바.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, 회계의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.
 - 사. 서기는 본 회의 모든 회의 사항을 기록 보관하며, 회원의 가입, 이동사항을 파악한다.
 - 아.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, 서기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 - 자. 각 지역대표, 각 대학대표는 임원회에 참가하며, 동창들과의 연락 임무를 담당하며, 동시에 회원 증원을 도모한다.
 - 차. 출판부에서는 편집부장과 고문을 두고, 동창회에 관련된 모든 출간물을 맡아 편집하고 출판한다.

제 5 장 이사회 구성 및 역할

- 제 11 조 이사회는 동창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창 중 100 명 이내로 상임이사 (Board of Directors)와 후원 이사 (Supporting Directors)로 구성된다. 상임이사는 의결권이 있고, 후원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며 이사회에 참석, 발언할 수 있다.

- 가. 이사회는 이사회의 역할은 물심양면으로 동창회를 후원하는데 있으며, 이사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나. 이사회비를 3년 연속 미납 시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.
- 다. 회장, 부회장(차기 회장)의 임무실행이 불가능해진 경우, 이사회는 그 여건을 수습하여 사표수리 및 새 후보를 공천한다.
- 라. 동창회의 Board of Officers (실행위원 즉 임원진들과 특별히 구성된 Committee Members)이 계획하는 새로운 사업은 사전에 이사회를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마.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선출, 총회에서 인준을 받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바. 이사회는 연 2회 정기 모임과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사. 감사(Auditor)는 2명을 이사회에서 임명하며, 감사는 회계가 제출하는 동창회 재정정보를 감사한다.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명은 유임할 수 있다.

제 6 장 Board of Directors 의 구성 및 역할

- 제 12 조 Board of Directors 는 법인체인 동창회가 New York State 와 IRS 규율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찰한다.
- 가. Board of Directors 는 전직 회장과 이사장들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,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- 나. Board of Directors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7 장 공천위원회 (Nominating Committee) 구성 및 역할

- 제 13 조 공천위원회는 필요시에 상임 이사회에서 선정한다.
- 제 14 조 공천위원회의 역할은 이사장, 부회장 및 장학위원 후보를 공천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(현 부회장은 총회에서 회장으로 인준된다).
- 제 15 조 공천위원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된다.

제 8 장 장학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

- 제 16 조 장학위원회의 구성은 회장, 이사장 2명과 이사회에서 추천과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 선출 위원 임기는 3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 직책상 위원은 본 회칙 임기에 따른다.

제 17 조 장학위원회의 역할은 (1) 본 위원회의 운영 세칙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 (2) 운영 세칙에 따라 매년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고,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. (3) 장학금의 주 자원은 이사회비로 충당 받는다.

제 9 장 고문의 구성 및 역할

제 18 조 고문은 동창 중에서 약간명을 추대하며, 동창회 제반 업무 자문에 응한다.

제 10 장 회칙 개정

제 19 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재심 및 개정할 수 있다. 경우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할 수도 있다. 단, 출석인원의 삼분의 이 (2/3)의 승인을 받아야 개정이 된다.

제 20 조 본 회칙은 통과된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.

제 11 장 부칙

제 21 조 회칙개정위원회와 같은 임시위원회(Ad hoc committee)는 필요시에 이사장이 선정, 소집한다.